

제353회 임시회
2017. 01. 20.(금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 민간위탁동의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 민간위탁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01월 06일
- 회부일자 : 2017년 01월 10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가 폐지(2017.3.20) 예정됨에 따라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의 운영사무를 도에서 직영 하던 것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,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 :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 운영 사무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~2018.12.31
- 위탁기관 : 사회복지법인, 법률구조법인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 - ※ (現) 도에서 직접 운영 : 여성발전센터(2003.1.1.~현재)
- 선정방법 : 공개모집
- 사업비 : 456,592천원(기금 50%, 도비 50%)
- 주요사무
 - 폭력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(365일 24시간 Hot Line 운영)
 - 관련 기관·시설(폭력상담소·시설, 경찰, 의료기관 등)과의 연계
 -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
 - 기타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제반사무

5. 검토의견

○ 법적 근거 및 동의안의 내용

- 본 동의안은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6,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민간전문기관에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내용으로
- 동 시설의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정함.

○ 종합의견

- 여성긴급전화 1366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, 긴급상담, 관련 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, 피해자 긴급구조지원 등 폭력피해 여성들의 위기상황 대처 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전문 가정폭력 보호시설로서,
- 전문상담원이 긴급 상담 및 안내,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24시간 Hot-Line을 운영하고 있으며, 정보 제공과 의료 및 법률지원 연계, 위기 개입 서비스 및 현장상담, 긴급피난처 운영 등 피해자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
- 또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과 112, 119, 의료·법률구조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 여성이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네트워크 운영의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
- 따라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자격, 풍부한 현장 경험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서비스와 피해자를 긴급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폭력피해 여성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전문 법인이나 단체, 사회복지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됨.
- 다만,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, 투명성, 객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선정되어야 하고,
- 또한, 민간위탁 시에도 1366상담원들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고용불안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.

참고자료①

2016년 전국 1366센터 현황

(기준일 : '16년 6월말 현재)

구분	상 담 인 원 수	건수	건수/ 1일	운영주체	비고 (순위)
계	242	132,902	평균 3.0건		
중앙	19	19,796	5.7	한국여성인권진흥원가정폭력방지본부	2
서울	14	11,570	4.5	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조계종	3
부산	13	8,548	3.6	(재) 부산여성가족개발원	4
대구	13	6,418	2.6	직영(향후 민간위탁 추진 예정)	8
인천	13	4,901	2.1	(사)한사회성장연구원	13
광주	13	5,719	2.4	직영	10
대전	13	7,071	3.0	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	6
울산	13	3,432	1.4	사회복지법인 밝은미래복지재단	18
강원	13	5,561	2.3	(재)착한목자수녀회	11
경기	14	15,643	6.1	(재)천주교수원교구 유지재단	1
경기 북부	13	5,221	2.2	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	12
충북	13	4,983	2.1	직영	13
충남	13	6,433	2.7	(사)대한YWCA천안지부	7
전북	13	4,668	2.0	(재)천주교 전주교구유지재단	15
전남	13	3,884	1.6	(재)전남여성플라자	17
경북	13	8,566	3.6	직지사 복지재단	4
경남	13	6,327	2.6	사회복지법인 범숙	8
제주	13	4,161	1.7	(재)천주교제주교구 유지재단	16

※ 1인/1일 상담실적 : 1위 (경기) 6.1건, 13위 (충북) 2.1건

관련규정②

○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4조의6(긴급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
2. 관련 기관·시설과의 연계
3.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
4.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(이하 "피해자등"이라 한다)의 임시보호

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○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조의4(긴급전화센터 설치·운영의 위탁) 법 제4조의6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 다만, 제3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.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2. 「법률구조법」에 따른 법률구조법인
3.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국어 상담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
4. 그 밖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
○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~ ② (생략)

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